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24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241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103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송진경, 양범

변론종결 2022. 4. 8.

판결선고 2022. 5.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103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870,000원 및 그중 105,1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4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D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부인한다.

- 1) 소외 C과 원고는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2) 원고는 D, F 및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그 일환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유효하다.
- 3) 피고의 투자금은 실제로 K사 사찰 극락전 봉안당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K사와의 관련사건[광주고등법원 2019나21346(본소), 2019나21353(반소) 사건]에서 F, D 및 C 명의로 투입된 비용도 원고의 비용으로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4) 설령 D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대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법인격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의 사업목적, 주소, 일부 임원과 주주가 중복되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임원, 주주의 다수는 C의 임원,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임원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 그 구성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의 채무 면탈 등 C 또는 F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양수에 의한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5. 1. 20. F과 K사 주지 L이 업무약정(제1차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한 것인데, 위 사찰 극락전 건물 소유자가 L에서 K사로 변경되고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는 원고가 설립되자, 2015. 2. 26. 제1차 업무약정의 당사자인 F을 원고로, L을 K사로 각 변경하여 제1차 업무약정의 모든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제2차 업무약정)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1차 업무약정상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원고가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 인정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총 104,820,000원 중 피고가 D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지출된 비용은 44,32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표권 남용에 대한 선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D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당사자인바,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D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D 또는 C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